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참고자료 : 농림수산물부 AI-SOP



차단방역(biosecurity)은 사람, 동물, 장비, 도구 또는 차량에 의해 전염성 질병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AI는 급성바이러스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차단방역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차단방역은 농장 안으로 질병이 들어와 퍼지는 것을 막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농장의 가축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육관리하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각종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며,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차단방역은 크게 외부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병원체를 차단하는 외부 차단방역과 농장내에 존재하는 병원체에 의한 농장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차단방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농장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거의 대부분 차량과 사람의 출입 및 외부 구입 가금, 야생조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농장내 출입을 효율적으로 차단, 통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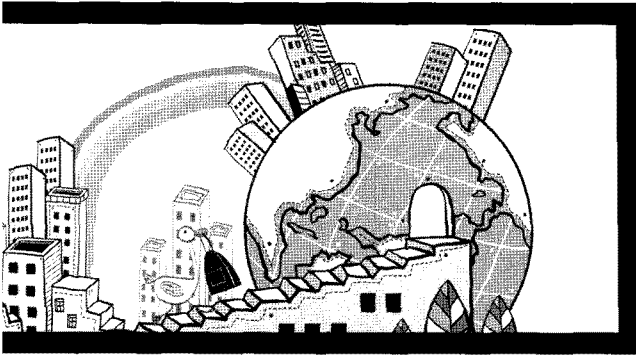
수 있는 출입구 소독시설의 설치, 가동 및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차단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차단방역 방법 및 대상별 차단방역수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 AI 및 뉴캐슬병과 같은 악성 가금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
- 살모넬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생길 위험을 경감
- 질병의 발생 및 전파를 억제하고 관련 업계 이익 및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기여
- 전체적인 계군 위생상태를 증진
- 질병치료 비용 경감 및 살처분 등에 따른 손실 감소, 그리고 이를 통한 농장 수익성 제고에 기여



가금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주요 차단방역 방법 6가지

1. 오염원 접촉 기회 차단

계군의 위생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농가는 방문자 및 여타 조류로부터 자신의 가금류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농가의 시설 및 가금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 가금이 있는 장소 주위에 담장(펜스) 설치를 고려한다. 이는 “청결구역”과 “오염구역” 사이에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한다.
- 오직 사육 가금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가금과 접촉한다. 만약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직접 가금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먼저 얼굴, 손, 발 등을 씻고 신발을 세척·소독하거나 갈아신은 후 접촉하도록 한다.
- 방문자가 신을 수 있도록 깨끗한 신발을 비치해 둔다. 단, 가금류 사육관련 종사자가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결코 그들이 농장의 가금류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수렵 조류와 철새는 병원체 및 질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금류농가의 계군과 접촉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만약 가금류 사육농가가 야외 사육을 하고 있다면, 가금류를 축사 안으로 넣거나 철망으로 에워싸인 구역으로 옮겨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야생 조류와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장소에서만 먹이 및 물을 공급해야 한다.
- 쥐 등 설치류 제거를 위한 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병원체 전파 매개체의 청결 유지

병원체는 신발, 옷 등에 묻어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전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가 AI 병원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 오직 가금류와 접촉할 때만 신고 입기 위한 축사 전용 신발 및 의복을 구비한다.
- 병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 세탁기 및 건조기에 의복을 세탁한다.
- 가금류가 있는 구역에 출입하기 전에 비누, 물 및 소독제로 손을 씻는다.
- 우리, 급이기 그리고 급수기를 매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다.
- 가금 및 이들의 분비물과 접촉하는 장비를 청소하고 소독한다.
- 소독실시 이전에 모든 분뇨, 깔짚(두엄), 부스러기 그리고 깃털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외관(표면)을 청소한다.
- 나무로 된 표면은 다른 것과 달리 소독효과가 떨어질



집중탐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 있으므로 소독실시에 따른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가금 사육관련 구역 밖에 둔다.
- 죽은 가금류는 농장내에서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한다.

3. 질병의 가금류농가 유입 차단

차량 및 트럭의 타이어, 가금 우리, 그리고 장비는 모두 AI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AI가 농장내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농장 관계자(농장주, 관리자 등)가 여타 조류가 있는 곳(타인 소유 농장, 가금류 도축장, 철새도래지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이전에 반드시 현장 또는 농장입구에서 본인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적절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농장내 가금류중 일부라도 무슨 목적으로든지 농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농장으로 온 적이 있다면, 이들을 나머지 가금류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적어도 2주간 질병유무 등을 관찰해야 한다.
- 새로운 가금은 기존의 계군에 입식하기 이전에 적어도 30일 동안은 기존 계군으로부터 격리한다.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 가금류와 나이든 가금류를 또는 서로 다른 축종과 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유래한 조류와 섞지 않는다.

4. 교차오염 오염 가능성 차단

관리하는 가금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우

연이든 또는 의식적으로든 AI 감염 또는 전파와 관련된 어떤 것도 여타 이웃의 농장 또는 가금사육 관련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금류, 잔디 및 정원 관리 장비, 도구 또는 비축물자들 이웃 또는 여타 가금류 소유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 빌려온 물품들은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되돌려준다.
- 나무 팔레트 또는 마분지 계란 상자와 같은 물품들은 이들에 작은 구멍이 많다는 점 등 때문에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코 공유하지 않는다.

5. AI 임상증상 예찰

조기 발견은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아래의 목록은 농장내 가금류에 있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증상들이다.

- 계군에 있어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이 갑작스런 폐사 증가
- 설사(녹색을 띠는 또는 물이 많은)
- 산란 감소
- 재치기, 헛떡임, 기침, 콧물
- 원기 부족 및 식욕 상실
- 눈 및 목부위 조직 팽창
- 육수, 비슬 및 다리의 자줏빛의 변색
- 침울 및 졸음
- 운동 실조

6. 환축 또는 폐사축 신속 신고

조기 신고는 차단방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질병의 특이한 증상 또는 예상치 못한 폐사를 발견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농장주는 즉시 이를 아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장주는 매일 2회 사육 가금의 상태를 관찰하여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전용전화 ☎1588-4060/9060]에 신고한다.

- 시·구·읍·면(가축방역업무 담당과)
-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림부(가축방역과)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고대상 가축 소유자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 장소
-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4대 원칙

11월부터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철새와 밀수되는 애완조류에 의한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환축 또는 폐사축 발견 즉시 신고
 환축 또는 폐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환축: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2. 환축 또는 폐사축 발견 즉시 신고
 환축 또는 폐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환축: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3. 환축 또는 폐사축 발견 즉시 신고
 환축 또는 폐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환축: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4. 환축 또는 폐사축 발견 즉시 신고
 환축 또는 폐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환축: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1588-4060/9060

농림수산식품부 www.maf.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aqs.go.kr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www.afrc.go.kr

철저한 방역은 나로부터 꼭 지켜야 할 대상별 '방역 수칙' 골자

◎축산농가 방역수칙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히 시험소,



집중탐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제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 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 안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 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햄 등 불법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 폐기하고 위복, 신발, 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 · 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 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부화장 방역 수칙

-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을 통제해주세요.
 - ①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상태 유지
 - ②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유지
 - ③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
 - ④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 울타리 상태 점검 및 미비 시 보완
 - ⑤출입구, 창문, 하수구, 배수구 등에 방서·방충 시설 설치
-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원인체 유입을 방지해주세요.
 - ①차량 및 발판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
 - ②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3일마다 교환 또는 보

충하되 소독조 내 오물 수시 제거

- ③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
- ④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
- ⑤난좌, 발육기,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
- ⑥종사자 외출 및 귀가 시 손발 세척
-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을 준수해주세요.
- ①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
- ②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피부 접촉 금지
- ③포르말린제제는 사람·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

◎오리 도축장 방역 수칙

- 닭·오리 운반차량 관리
- ①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
- ②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을 기록할 것
- ③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
- ④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
- ⑤하차 즉시 세차장에서 차량을 소독(바닥·하체·바퀴 등 차량 전체)하되, 수의과학검역원 권장소독약으로 소독 실시
- 일반출입차량 관리
- ①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출입 허용
- ②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

-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소독
- ①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 ②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특히, 손·신발 소독)
- 계류장·도축시설 주변소독
- ①작업 전·후 계류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 ②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
- ③도축부산물, 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

◎사료 운반차량

-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대리점, 지역 농축협 등)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주세요.
- ①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 오리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
- ②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
- ③벌크 및 톤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도(축산과)에서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함
- ④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 “오리사료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
- ⑤사료공장,대리점,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
- ⑥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
-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 ①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 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 **집중탐구**

고병원성 시 차단방역

②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③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 시 소독을 실시

④자가 트랙터, 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

• **운반업체 및 운반자**는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①시도(시군) 축산과에 소속,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등을 신고하고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

②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③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

④차량에 시·도 발급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⑤농가 도착 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 시 소독 실시

⑥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⑦도입(계)장 도착 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 시 소독 실시

• **오리 농가**는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①전용차량 지정서와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확인(닭 농가는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만 확인)

②지정서(오리) 및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군 등 방역당국에 신고

③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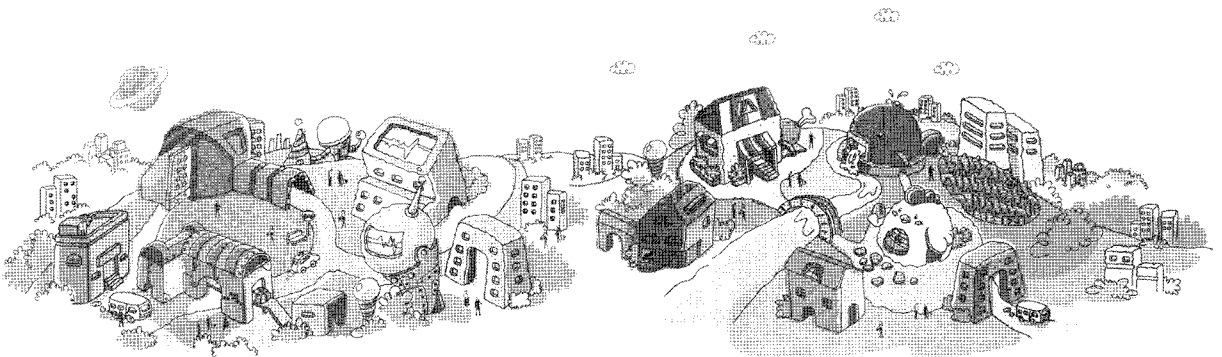
④농장 자체 운반 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 **오리 도축장(방역관 또는 자체검사원)**는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①출하차량 도착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

②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여부 지도,감독 철저

③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통보



가축방역 관련기관 연락처

○농림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DDD	전화번호	관할지역
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427-719	02 FAX	500-1942 500-1938/9 504-0908	전국

○검역원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DDD	전화번호	관할지역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430-824	031 FAX	467-1713 467-1851 467-1853 467-1878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DDD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3	137-130	02 FAX	570-3435~3235 570-3206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616-130	051 FAX	331-5012 888-6819 338-8266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7	706-090	053 FAX	760-1300~1304 760-1302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404-251	032 FAX	440-6440/1 440-6446/7 576-7785	인천, 강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광주 북구 자라봉길 244	502-240	062 FAX	571-0497~0498 571-0496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042 FAX	870-3484~3491 870-348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689-813	052 FAX	229-5240/1 229-5249	울산광역시



집중탐구

고병원성 시 차단방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번호		
경기도 축산위생 연구소	본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441-460	031 FAX	299-5430 299-5431 294-6773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성남, 오산, 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 이천시 진리동371-4	467-060	031 FAX	635-3680 636-3676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양평
	남부지소	경기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274-10	456-820	031 FAX	651-2037 651-1614	용인, 평택 안성
	제2가축위생 연구소본소	경기 양주시 고읍동 340-1	482-020	031 FAX	856-1011/2 856-1013/4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고양, 파주
	제2가축위생 연구소북부지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7-1	472-840	031 FAX	593-4011 -4012	남양주, 구리 기평, 포천
강원도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7	200-822	033 FAX	243-9580-2 243-9584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장현동 74-7	210-180	033 FAX	647-6405/6 647-6405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반곡동 1098-2	220-170	033 FAX	761-1880/1 -18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08-153	232-802	033 FAX	332-6926 333-5302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사동 649-3	217-130	033 FAX	636-8581 636-8582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충청북도 축산위생 연구소	본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20	363-931	043 FAX	220-5611-4 220-5629	청주, 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380-230	043 FAX	220-5644-5 220-5646	충주, 음성
	제천시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390-090	043 FAX	220-5641/2 220-5649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370-880	043 FAX	220-5631/2 220-5643	보은, 옥천 영동
충청남도 축산위생 연구소	본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350-821	041 FAX	631-3091/4 631-3092/3	보령, 청양 홍성
	아산시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432-1	337-850	041 FAX	548-2950 540-2567	천안, 아산
	공주시소	충남 공주시 금홍동 190-10	314-140	041 FAX	881-0127/8 840-2689	공주, 금산 연기
	당진시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343-803	041 FAX	352-4056 352-4056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부여시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323-808	041 FAX	833-8611 830-2784	논산, 부여
	태안시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8	041 FAX	675-4349 675-4348	태안, 서천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번호		
전라북도 축산진흥 연구소	본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052-1	560-220	063 FAX	220-6530 220-6511	전주, 완주 김제, 부안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063 FAX	635-5777 635-5778	남원, 임실 순창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0-814	063 FAX	535-3526 535-9118	정읍, 고창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063 FAX	834-4918 834-4916	군산, 익산
	장수지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37	597-841	063 FAX	352-9876 352-9877	무주, 진안 장수
전라남도 축산기술 연구소	축산기술 연구소본소	광주 광산구 복룡동 89-5	506-555	062 FAX	941-2577/8 -3667	목포, 나주, 담양 회산,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080	061 FAX	755-6396 751-1045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곡성 고흥
	남부지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	527-805	061 FAX	432-8938 433-7900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경상북도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	대구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053 FAX	326-0012~3 -0014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12	760-803	054 FAX	850-3285 -3289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933	054 FAX	748-6624 748-6685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답동 476-1	742-320	054 FAX	533-1751/2 532-4965	김천, 상주 문경, 예천
경상남도 축산진흥 연구소	본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360	055 FAX	750-6341/3 750-6339	진주, 사천 산청, 하동, 함양, 남해
	중부지소	경남 장유면 부곡리 17-8	641-041	055 FAX	313-9009 212-5779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07-1	678-800	055 FAX	931-3245 930-3382	합천, 거창 의령, 창녕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900-1	650-810	055 FAX	646-4395 640-4987	통영, 거제 고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제주 제주시 초전읍 와흘리 782	690-962	064 FAX	710-4138 -4139	제주	